

전주대학교 학칙

(전부개정 2020.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 2015.11.24.>

제2조(교육목표) ① 본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영성·인성·지성의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학문과 교육의 실용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실용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20.3.1.>

② 본교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독교적 인성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섬김의 리더십을 배양한다.
2. 기초역량 강화교육을 통하여 논리적인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3. 다학제간 융합교육을 통하여 자기개발 능력과 창의적 전문성을 배양한다.

③ 본교의 인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천하는 봉사인
2. 학습하는 교양인
3. 도전하는 전문인

제3조(조직) ① 본교에 총장, 부총장, 대학, 대학원, 대학본부, 부속(설)기관,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각종 사업단 등을 두며, 직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② 대학에 인문콘텐츠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의과학대학, 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문화융합대학, 문화관광대학, 사범대학, 미래융합대학, 슈퍼스타칼리지(SuperStar College)를 두며, 각 단과대학에 학부, 학과 및 전공을 둘 수 있다. 다만, 제규정에서 따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학과”는 “학부” 및 “전공”의 의미를 포함한다. <개정 2023.7.1.>

③ 대학원에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두며, 대학원의 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및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⑤ 학교기업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주대학교 학교기업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개정 2020.3.1.]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① 본교 학사과정에 설치한 모집단위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모집단위를 통합하여 모집할 수 있으며, 통합모집의 대상과 방법, 통합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의 학과 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6.1., 2010.11.8., 2011.6.23., 2011.11.1., 2012.5.18., 2013.6.14., 2013.6.27., 2015.3.1., 2015.11.24., 2016.3.1., 2017.3.1., 2018.3.1., 2019.7.1., 2020.6.1., 2023.7.1.>

② 모집단위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단위구조개편 및 정원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③ 본교에 입학정원을 갖지 아니하는 연계전공, 융합전공, 마이크로전공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전공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

④ 본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전공)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계약학과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학과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제2장 수업 및 재학 연한, 수업일수 등

제5조(수업연한) ① 본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수학기 및 취득학점 등 학칙이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졸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 2015.11.24.>

제6조(재학연한) 본교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4.>

제7조(학년도 및 학기) ① 본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1.>

②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매 학년도 2개 학기로 구분한다. 다만,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주 이내에서 학기 시작일 전에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6.8.1.>

1. 1학기: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2학기: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③ 학과(전공) 및 학년 등에 따라 유연학기제 및 집중이수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학 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절수업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1.>

제8조(수업일수)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한다.

②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③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에서 정하되, 제30조의 학점당 이수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휴·복학 및 수강신청 등을 위한 수업일수 기준은 매 학기 수업 시작 후 3분의 1 이내로 한다.

제9조(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름방학: 1학기 수업종료 다음날부터 2학기 수업시작 전날까지

2. 겨울방학: 2학기 수업종료 다음날부터 다음 학년도 1학기 수업시작 전날까지

3.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임시휴일

4. 개교기념일: 5월 5일

② 총장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휴업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수업기간 내 휴업일에 대하여 보강주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제3장 입학, 휴·복학, 전과 등

제10조(입학) ① 입학은 신입학·편입학·재입학으로 구분한다.

- ②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그 시기는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4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11.2.28>
- ④ 총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학생,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에 대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 ⑤ 총장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학전형 기준 및 방법을 설정하여 공정하고 공개적인 경쟁 방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 ⑥ 본교에 입학전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5.2.2., 2015.3.1.>
- ⑦ 총장은 입학한 학생을 학적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학칙시행세칙」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신입학) ① 본교에 신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입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입학전형에 응하여야 한다.

- ②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4. 법령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5.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③ 총장은 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 인·적성검사를 말한다), 서류전형 등의 성적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3.1.>
- ④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3.1.>
- ⑤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 및 졸업 후라도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지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지원서 및 첨부서류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 합격한 경우 <개정 2016.8.1.>
 3.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 등 지원 및 등록 방법을 위반한 경우
 4.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신설 2016.8.1.>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신설 2016.8.1.>

제12조(편입학) ① 본교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입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입학전형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신입학에서 미충원한 인원이 있거나 자퇴 및 제적 등 중도탈락한 학생이 있을 경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편입학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 ③ 총장은 대학에서 2학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3학년으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예정)자는 4학년으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6.14>
- ④ 총장은 외국인 학생의 경우 2학년 이상에 입학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6.14>
- ⑤ 총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교육과정 연계협약을 체결한 전문대학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3학년으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3학년 입학정원의 3% 이내 및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신설 2015.11.24.>
- ⑥ 총장은 학사학위 소지자에 대하여 3학년 입학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2% 이내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 이내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5.3.1.>
- ⑦ 총장은 편입생을 선발할 때 전적 대학 내신성적과 제11조제3항의 대학별 고사 성적 등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2.2., 2015.3.1.>
- ⑧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후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입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로 한정하되, 퇴학 등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17., 2015.11.24., 2016.5.24.>

- 1. 자퇴하거나 제적된 후 1학기 이상 지난 경우
- 2.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 ② 총장은 해당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 유사 계열 및 학과의 모집단위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범계열과 보건계열 학과는 제외한다.
- ③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의 이행, 창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 병역의무의 이행,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개정 2015.2.2., 2015.11.24., 2019.7.1., 2022.1.1.>

- ② 총장은 질병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거나 다른 학생의 수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하여 휴학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 ③ 휴학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을 단위로 하되 통산하여 신입학한 학생은 8개 학기, 편입학 및 재입학한 학생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4학년에 편입학한 학생은 2개 학기로 하며, 병역의무의 이행, 임신·출산·육아, 창업, 또는 전향에 따라 총장이 권고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4.>
- ④ 전향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장애학생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특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0.1.>
- ⑤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복학) ① 휴학 후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복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2., 2015.11.24., 2016.2.11.>

- ② 복학신청은 휴학 만료 학기의 수업종료일로부터 복학 학기의 수업시작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 학기 수업일수 3분의 1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학생이 교과별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전역 날짜와 관계없이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④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전과) ① 소속학과를 변경(이하 “전과”라 한다)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과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 2015.11.24.>

②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 개정 2013.6.27.]

제17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신청서에 보호자의 연서를 받아 학과장 및 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2022.1.1.>

제18조(제적)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1. 휴학기간이 지난 후 수업일수 3분의 1이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2.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1.2.28.>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징계처분으로 제적이 확정된 경우 <개정 2019.1.1.>
5. 「학생평가규정」에 따른 학사경고 제적 대상인 경우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제적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의 범위에서 학과장의 신청으로 휴학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1.>

제19조(학사경고) ① 매 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한다.

② 학사경고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학사경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생평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3.>

제20조(수료) 각 학년을 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수학기 및 취득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간호학과 2022학번까지는 2015학번 기준을, 2023학번부터는 2017학번 이후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5.11.24., 2016.2.11., 2020.3.1., 2023.6.23.>

구 분	이수학기	취득학점					
		일반대학				미래융합대학	영어트랙
		2014학번 이전	2015학번	2016학번	2017학번 이후		
1학년	2	35	35	33	33	30	28
2학년	4	70	70	65	65	60	55
3학년	6	105	105	98	98	90	83
4학년	8	140	140	130	130	120	110
5학년	10	160	169	169	163	-	-

제21조(졸업) ①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기 및 졸업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4., 2016.2.11., 2020.3.1., 2023.6.23.>

구 분	이수학기	졸업학점				
		2014학번 이전	2015학번	2016학번	2017학번 이후	2023학번 이후

구 분	이수학기	졸업학점				
		2014학번 이전	2015학번	2016학번	2017학번 이후	2023학번 이후
일반학과	8	140	140	130	130	130
간호학과	8	140	140	140	140	130
건축학과	10	160	169	169	163	163
미래융합대학	8	-	-	-	120	120
영어트랙	8	-	-	-	-	110

② 졸업논문은 학과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졸업시험 또는 실기발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2.2., 2015.3.1., 2015.11.24.>

③ 졸업학점을 모두 취득하였으나 졸업논문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료로 처리한다.

④ 졸업논문 및 조기졸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2016.2.11., 2020.3.1.>

제22조(포상 및 징계) ① 본교에 학생 및 학생단체(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포상 및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둔다.

②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학생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학칙」, 「학생준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④ 총장은 유기정학이나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징계 기간 중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감면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2.2., 2015.11.24.>

⑤ 총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추가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⑥ 상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학위의 종류 및 수여·취소

제23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① 제21조의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0.6.1, 2011.6.23, 2012.5.18., 2013.6.14., 2015.2.2., 2015.3.1., 2016.3.1., 2017.3.1., 2017.6.1., 2018.3.1., 2019.7.1.>

② 총장은 복수전공, 연계 및 융합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 해당 학위를 동시에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전공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양 대학이 각각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학사학위취득 유예) ① 총장은 학점 이수 등 제21조의 졸업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 1년 이내에서 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4., 2015.2.2., 2017.9.1., 2019.1.1.>

②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학위 취소) 총장은 학위취득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혹은 제35조제4항에 해당하여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및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2.2.>

제26조(명예졸업) ① 총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19.1.1.>

1.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2. 본교의 명예를 높였거나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그 밖에 명예졸업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명예졸업 대상자는 재학했던 학과 소속 학장의 추천으로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③ 명예졸업증서는 본교 학위수여일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여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④ 명예졸업자는 학적부에 명예졸업사항을 등재하되 제 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⑤ 총장은 명예졸업자가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외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제27조(교육과정 편성) ① 본교의 교육과정 편성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 및 인재상 구현
2. 사회의 변화와 산업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 배양
3.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산업체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 반영

② 학생의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양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그리고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개정 2019.12.5.>

[본조개정 2017.9.1.]

제28조(교육과정 운영) ①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 운영규정」으로,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4.1.1., 2015.2.2., 2015.11.24.>

② 본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직과정을 운영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따른다.

③ 각 학과(전공)는 국내·외 기관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 인증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인증제 교육과정의 설치 및 운영, 이수기준, 학위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3.1.>

④ 본교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하며, 그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⑤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애학생 지원규정」으로 정한다.

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협정으로 따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교육과정 이수) ① 학생은 입학 또는 전과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을 주전공(제1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주전공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공의 심화과정 또는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5.3.1., 2015.11.24., 2017.9.1., 2019.10.1., 2021.12.1.>

1.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신설 2021.12.1.>

2. 연계전공 또는 융합전공 <신설 2021.12.1.>

3. 마이크로전공(2개 이상) <신설 2021.12.1.>

② 교양 교육과정은 영역별 지정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강편람」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③ 진로지도세미나의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로지도세미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사회봉사교과목의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회봉사교과목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 학군사관 후보생(R.O.T.C.)은 군사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5.11.24.>

⑥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 「교육과정편람」 및 「수강편람」으로 정한다. <개정 2017.9.1., 2017.12.1., 2020.3.1.>

제30조(교과의 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15시간 이상 수업한 것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체육 및 실습·실습·실기·연습·세미나 등의 교과는 30시간 이상 수업한 것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17.9.1.>

제31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원격수업, 이동수업, 집중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② 수업편성, 수업기간, 출결관리, 휴강 및 보강, 수업 전·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업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③ 방송·통신을 이용한 원격수업의 운영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격교육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2023.4.25.>

④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선수촌에 입촌한 학생에 대하여는 이동수업 및 집중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강신청 가능 학점은 해당 학기 수강신청 제한학점 이내로 한다.

⑤ 학사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교수·학습 방법 개선) ① 총장은 본교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 대내·외 교육 수요 및 환경변화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학습 경험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수업 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성적의 관리) ① 학업성적은 수시시험, 기말시험, 과제,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반영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3.>

② 시험은 학사일정에 따라 매 학기 수시 및 기말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좌별로 조기시험 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2.2., 2015.11.24.>

③ 시험은 필답형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구술, 논문 또는 실기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수업 담당교원이 정한다. <개정 2015.2.2., 2015.11.24.>

④ 수업 담당교원은 장애학생에게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시험지 확대 제공, 시험응시에 필요한 도구 허용,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10.1.>

⑤ 강좌별로 출석시간이 수업시간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 학생의 성적은 낙제(FA)로 하며, 출

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⑥ 성적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평가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제34조(복수전공) ① 복수전공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1항에 따른다.

②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전공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

제35조(학점인정 및 취소) ① 학점은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별로 인정한다.

②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③ 개인(팀) 프로젝트, 국내·외 현장실습, 창업, K-MOOC, 기업 직무역량 강화과정 등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 2015.11.24., 2022.11.29., 2023.11.8.>

④ 이미 인정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특별학점 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특별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1. 국가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소프트웨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대학이 인정한 외국어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삭제 <2022.11.29.>
3.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 복무 중 학점을 취득한 경우
4. 수시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학 전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5.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6. 그 밖에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 학점인정심의회는 학사관리위원회로 갈음한다.

③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제37조(편·재입학 학점인정) ① 총장은 편입학한 학생에게 편입자격에 해당하는 수료학점의 범위에서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5.11.24.>

② 재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재학 중에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졸업요건은 재입학한 학과 및 학년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4.1.1.> <개정 2015.11.24.>

③ 편·재입학한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1.1.> <개정 2015.11.24.>

제38조(학습경험 학점인정) ① 총장은 미래융합대학 학생이 교외에서 학습한 경험을 관련 전공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기당 1과목으로 한정하며 Pass 학점을 부여한다.

② 학습경험으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학습경험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래융합대학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5.>

③ 학습경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3.1.]

제39조(국내·외 교류 학점인정) ① 본교와 국내·외 대학 간 협약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16학점 범위에서 인정하되, 졸업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015학번 이전은 18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8.11.1.>

② 국내·외 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40조(등록) ① 매학기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 및 수업연한 초과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지 못한 학생의 수강신청 및 출석은 무효로 한다.

제41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 휴학 후 복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3분의 1까지 수강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11.24.>

② 수강신청을 완료한 강좌는 수강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강정정 기간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③ 삭 제 <2023.6.23.>

④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 및 「수강편람」으로 정한다.

제42조(재수강) ① 학생은 이미 수강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재수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평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2017.12.23.>

제8장 공개강좌 및 시간제 등록제

제43조(공개강좌) ① 본교에 교양,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공개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여석의 범위에서 수시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수강생이 규율을 문란케 한 경우에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③ 총장은 공개강좌 수강생에게 본교 재학생 등록금의 범위에서 실비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④ 공개강좌의 교과목, 시기, 수강 자격 및 정원, 장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제44조(시간제 등록생) ① 본교는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하는 시간제 등록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생의 지원자격, 선발방법, 등록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

제9장 교원의 교수시간

제45조(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제8조제2항의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에서 정한 강의시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강의시수는 수업의 특성 및 수강 인원수 등에 따라 실제 수업시간보다 적게 인정할 수 있다.

1. 정년계열: 학부 모집단위 소속(겸직 포함) 교원 9시간, 학부 모집단위 외 소속 교원 12시간 <개정 2023.9.1.>

2. 비정년계열: 강의중심교수 및 학부 모집단위 소속 외국인 교원 12시간, 학부 모집단위 외 소속 외국인 교원 16시간, 산학협력중점교수 9시간 <개정 2023.9.1.>

③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1.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9시간 이하

2. 강사 및 그 밖의 비전임교원: 6시간 이하

- ④ 교원의 교수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으로 정한다.
[본장개정 2020.6.1.]

제10장 학생회 등 학생 자치활동

제46조(학생회 등) ① 본교에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24.>

② 학생단체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24.>

③ 학생회는 대학평의위원회에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을 추천한다. <신설 2016.8.1.>

④ 학생단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준칙」 및 「학생단체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2016.8.1.>

제47조(금지활동)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1. 대학의 교육목적에 어긋나는 활동
2. 수업 및 연구 등 대학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학생단체 활동
3. 교내·외에서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활동

제48조(학생활동 사전신고) ①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취업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선교봉사처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5.18. 2014.1.1.>

1. 교내·외 학생의 단체활동이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의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의 내부 초청
5. 종교활동

② 학생집단활동의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간행물 등) ① 학생 또는 학생단체는 간행물을 발간 및 배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간행물 발간에 관한 세칙」으로 정한다.

② 학생 또는 학생단체는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홍보물 게시에 관한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장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제50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규정」으로 정한다.

② 국가장학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장학금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근로장학생) 총장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교내외 시설 등에 배치되어 근무할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의 대가를 통하여 노동의 가치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근로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장학생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52조(등록금 납부) ①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수업료,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분할납부신청서를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28.>

② 장애학생 및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③ 계절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등록금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2019.12.5.>

제53조(등록금 감면) ① 등록금은 결석, 출석 정지 또는 정학 등을 사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2., 2015.11.24.>

② 법령 등에 따른 등록금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규정」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제54조(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거나 법령에 따라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휴학 중인 학생이 반환을 신청한 경우
4. 휴학 중인 학생이 복학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반환 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자퇴신청서 및 휴학신청서를 소속 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2.28., 2015.2.2., 2015.11.24., 2018.11.1.>

반 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신·편입생: 입학일 전일까지 재 학 생: 해당 학기 시작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시작일 기준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시작일 기준 31일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시작일 기준 61일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시작일 기준 91일부터	반환하지 않음

④ 계절수업 등록금의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절수업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장 학칙 개정 절차 등

제55조(학칙 개정) ① 총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학칙」은 각 조문별로 관련 부서가 관리한다. <개정 2015.11.24.>

③ 「학칙」 개정 사유가 발생한 부서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평의원회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명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16.2.11.>

④ 기획처장은 개정안이 법령 및 정관에 부합하는지, 그 내용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한 후 교내 통신망 및 본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공람하여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⑤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안을 확정·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제56조(제규정 관리) ① 제규정이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본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대학헌장, 학칙, 규정, 세칙, 내규 및 지침 등의 모든 규범을 말한다.

② 상위규정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포괄적으로 위임하거나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③ 제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규정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4장 대학평의원회 등

제57조(대학평의원회) ① 본교에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및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제24조의4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개정 2013.3.6., 2016.8.1., 2021.2.18.>

②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과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구성단위별 평의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8.>

1. 교원 5명
2. 직원 2명
3. 조교 1명 <신설 2021.2.18.>
4. 학생 1명
5. 동문 1명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2명

[본조개정 2016.8.1.]

③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자문에 한정한다. <개정 2021.2.18.>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학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④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8.>

제58조(기금운용심의회) ① 본교에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

런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29.>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무및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교에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2.28.]

제60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 본교 대학평의위원회에 「사립학교법」 제14조 및 「학교법인 신동아 학원 정관」 제24조의3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학평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명
2.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③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장 위원회

제61조(대학발전위원회) ① 본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발전위원회를 둔다.

1.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발전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발전계획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발전계획 관련 보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학발전위원회는 부총장, 본부장, 처장, 산학협력단장,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대학발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발전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62조(정책기획위원회) ① 본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위원회를 둔다.

1. 대학 발전계획(교육·연구·재정·시설 등)에 관한 사항
2. 기구 조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급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책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기획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본부장, 처장,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기획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책기획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63조(교무위원회) ① 본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1. 학사운영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3. 직제 및 학생 모집단위에 관한 사항

4. 대학헌장,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본부장, 처장, 산학협력단장, LINC3.0사업단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4.1.>

③ 교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6.8.1.]

제64조(참여소통위원회) ① 본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여소통위원회를 둔다.

1. 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 간의 협의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

2. 대학 행정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의사 반영이 필요한 사항

3. 학과, 부서 등 공식 조직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내 현안 사항

4. 구성원 간의 갈등 해결과 화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참여소통위원회는 총장, 기획처장, 교수회장, 직원회장, 총학생회장, 대학평의위원회 동문의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4.>

③ 참여소통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성원 참여·소통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5조(각종 위원회) ① 본교의 학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으로 정한다.

제16장 교수회의

제66조(교수회의) ① 본교에 교수회의를 둔다.

② 교수회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총장 또는 교수회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전체 교수회의는 총장이, 단과대학 교수회의는 학장이, 대학원 교수회의는 대학원장이, 학과 교수회의는 학과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본조개정 2016.8.1.]

제17장 교수회 및 직원회

제67조(교수회) ① 본교에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 회원의 자격과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3.>

③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협의·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1. 대학평의원회의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2. 교수회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교수복지 및 처우에 관한 사항
4. 주요 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총장선임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항
6. 학장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7. 교육 및 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삭 제 <2023.6.23.>

[본조개정 2016.8.1.]

제68조(직원회) ① 본교에 직원회를 둔다.

② 직원회 회원의 자격과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직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3.>

③ 직원회는 대학평의원회의에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을 추천한다.

④ 삭 제 <2023.6.23.>

[본조개정 2016.8.1.]

제18장 자체평가

제69조(자체평가) ① 총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② 총장은 전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총장은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자체평가 및 학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만족도 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⑤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평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6.8.1.]

제19장 보칙

제70조(준용) ① 이 학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전주대학교 대학헌장」을 준용한다.

②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학칙시행세칙」, 「교육과정편람」 및 「수강편람」으로 정한다.

③ 이 학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국제학생과 관련된 사항은 「국제학생 학사운영지침」 및 「수강편람」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3.>

부 칙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학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80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본 개정 학칙 제2조, 제4조, 제22조 1항, 제28조, 제29조 44항, 제31조는 1981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1981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학적변동 사유가 없는 학생들의 졸업이수 학점에 관해서는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및 제3조는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5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본 개정 학칙 제5조 및 제29조의 학과별, 계열별, 졸업정원 관리 사항은 1983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본 개정 학칙 제28조 1호는 198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 본 개정 학칙 제31조 2항은 198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4. 본 개정 학칙 제34조 1항은 1985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학칙 제45조 1항 사항 중 졸업영어시험 실시는 198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6. 본 개정학칙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는 본교 학생회칙이 제정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7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통령령 제12237호(' 87. 8.29)에 의거 1983. 12. 22부터 1987. 7. 10 사이에 학원사태 관련으로 제적된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8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 국어교육과, 한문교육과, 외국어교육과(일어·영어 전공)의 1984학년도부터 1990학년도까지 졸업정원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어교육과 80명, 한문교육과 80명, 외국어교육과(일어·영어 전공) 80명으로 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8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대학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표기를 다음과 같이한다.

가. 1988학년도 전에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에 입학한 자는 1991. 8. 31까지 졸업이 가능하면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로 그 이후 졸업자는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예·체능대학 음악학과, 미술학과로 복학하여 졸업하되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나. 대학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라 명칭 표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1989학년도 전에 지역대학 전 학과에 입학한 자로서 재적중인 학생은 그 소속을 각각 지역학대학의 입학한 것으로 본다.
- (2) 1989학년도 학과 소속변경에 따라 1989학년도 전에 사범대학 상업교육과에 입학한 자로서 재적중인 학생은 경상대학 상업교육과에 각각 입학한 것으로 본다.
- (3) 1989학년도 학과 명칭 변경에 따라 1989학년도 전에 입학한 인문대학 도서관학과 재적 학생은 문헌정보학과로, 이공대학 공업경영학과는 산업공학과로, 사범대학의 사회교육과는 역사교육과로, 외국어교육과는 영어교육과와 일어교육과에 각각 입학한 것으로 본다.

2. 본 개정 학칙은 1981년 3월 이후부터 1987년 3월 입학자로서 1990학년도 졸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졸업정원을 적용하고 1981년 2월 이전 입학자와 1988년 3월 이후 입학자는 입학정원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9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1990학년도 이전에 사회사업학과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사회복지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2. 본 개정학칙은 제8장 제26조 7항에 의한 학사경고 재적의 학사경고 횟수는 1991학년도 2학기부터 기산한다.
3. 대학 및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학적적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87년도 전에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에 입학한 자가 1991년 8월 31일까지 졸업이 가능하면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로 졸업한다. 단,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예체능대학의 음악학과, 미술학과에 복학하여 졸업하되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입학 당시의 대학 및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 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 호 '93. 4. 2) 제2조 제 3장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5장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 정원령(대통령령 제 호 '93. 4. 2) 제2조 제3항 제 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학칙은 199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1995학년도 학과 소속 변경에 따라 1995학년도 전에 일어교육과, 역사교육과에 입학한 자는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역사교육과로 졸업한다.
2. 다만,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1998학년도 2월 후에 졸업하는 자는 인문대학의 일어일문학과, 사학과에 복학하여 졸업하되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입학 당시의 대학 및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되 199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변경학칙에 의한 대학 학과 통·폐합 및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1996학년도 전에 입학한 자는 입학당시의 대학 및 학과로 졸업한다.
2. 다만,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1999학년도 2월 후에 졸업하는 자는 명칭 변경된 대학·학부 및 학과 졸업을 원칙으로 하되 입학당시의 대학 및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 가. “법정대학(법학과, 행정학과, 부동산학과)” 과 “지역학대학(지역계획학과, 사회복지학과)” 은 “사회과학대학” 으로
 - 나. “경상대학 경제학과” 와 “지역학대학 지역경제학과” 는 “경상대학 경제학부” 로, 이공대학 “생물학과” 와 “미생물학과” 는 “생명과학부” 로, 이공대학 “컴퓨터공학과” 와 “전기전자공학과” 는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로
 - 다. 경상대학 “통계학과” 는 “응용통계학과” 로, 경상대학 “상업교육과” 는 “경영정보학과” 로, 이공대학 “물리학과” 는 “전자물리학과” 로, “화학과” 는 “화학·신소재학과” 로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학과 분리 및 명칭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적을 적용한다.

1. 1996학년도 전에 전자계산학과에 입학한자가 복학할 때에는 컴퓨터공학과 또는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에 복학할 수 있다.
2. 1997학년도 전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에 입학한자가 복학할 때에는 전기전자공학부 또는 컴퓨터공학과에 복학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수업료 등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 전에 납부한 납입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변경된 학칙 제52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단, 이 변경된 학칙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학기 또는 분기 이후의 납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제정당시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시행되어진 내용 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학칙의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③ (경과조치) 학부통합·분리 및 명칭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1998학년도 이전에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로 입학한 자는 “정보경영학부”로 복학할 수 있으며,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2. 1998학년도 이전에 경제학부 및 응용통계학과, 보험학과, 경영정보학과로 입학한 자는 “경제정보학부”로 복학할 수 있으며,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3. 1998학년도 이전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및 전기전자공학부로 입학한 자는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및 컴퓨터공학과로 복학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단, 사범계 학과(교육과 포함)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 당시로 적용한다.
 1.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사회과학대학 “중국학과”는 “언어문화학부”로 복학하여야 한다.
 2.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국제관계학과”, “지역계획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상대학 “경제정보학부”의 “경제학전공”, “지역경제학전공”은 “사회과학부”로 복학하여야 한다.
 3. 인문대학 “기독교학과”는 “기독교학부”로 복학하여야 한다.
 4. 사회과학대학 “법학과”는 “법정학부”로 복학하여야 한다.
 5.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경상대학 “경제정보학부”의 “금융보험학전공”은 “금융보험부동산학부”로 복학하여야 한다.
 6. 경상대학 “정보경영학부”는 “경영학부”로 복학하여야 한다.
 7. 경상대학 “경제정보학부”의 “정보통계전공”과 “경영정보전공”은 “정보기술학부”로 복학하여야 한다.
 8. 이공대학 “수학과”, “화학신소재학과”, “환경과학과”는 “응용과학부”로 복학하여야 한다.

9. 이공대학 “전자물리학과”,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는 “전자매체공학부”로 복학하여야 한다.
10. 이공대학 “산업공학과”, “기계공학과”는 “기계산업공학부”로 복학하여야 한다.
11. 이공대학 “건축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도시공학과”는 “건축토목도시공학부”로 복학하여야 한다.
12. 예체능대학 “음악학과”, “미술학과”, “산업미술학과”, “체육학과”는 예체능학부로 복학하여야 한다.
13. 2부대학 “기독교학과”는 야간 “기독교학부”로 복학하여야 한다.
14. 2부대학 “법학과”는 야간 “법정학부”로 복학하여야 한다.
15. 2부대학 “부동산학과”, “경제정보학부”의 “보험학전공”은 야간 “금융보험부동산학부”로 복학하여야 한다.
16. 2부대학 “정보경영학부”는 야간 “경영학부”로 복학하여야 한다.
17. 2부대학 “경제정보학부”의 “응용통계전공”은 야간 “정보기술학부”로 복학하여야 한다.
18. 2부대학 “산업공학과”, “기계공학과”는 야간 “기계산업공학부”로 복학하여야 한다.
19. 2부대학 “건축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는 야간 “건축토목도시공학부”로 복학하여야 한다.
20. 2부대학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는 야간 “전자매체공학부”로 복학하여야 한다.
21. 2부대학 국제관계학과에 입학하였다가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복학한 자는 사회과학부에 재적한 것으로 적용한다. 단, 학생의 원인에 의하여 입학 당시의 학과로 졸업을 원할 시는 입학 당시의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부대학 기독교학부가 2000년 입학생부터 폐과되므로 학적변동에 의해서 복학하는 자는 이부대학의 기독교학부 또는 주간학부로 복학할 수 있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2000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200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 학칙 제27조 ⑤항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당시 교사자격증의 부전공과목 표시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2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27조, 제42조는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3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법정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법정학부” 또는 “사회과학부” 또는 “경제정보학부”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2. “금융보험부동산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사회과학부” 또는 “경제정보학부”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3. “사회과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법정학부” 또는 “사회과학부” 또는 “경제정보학부”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4. “정보기술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경제정보학부” 또는 “정보기술공학부”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5. “정보기술컴퓨터공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경제정보학부” 또는 “정보기술공학부” 또는 “공학부”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6. “생명과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과학기술학부”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7. “응용과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과학기술학부” 또는 “정보기술공학부”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8. “자연과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과학기술학부” 또는 “정보기술공학부”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9. “기계산업공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공학부”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10. “건축토목도시공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공학부”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11. “전자매체공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과학기술학부” 또는 “정보기술공학부” 또는 “공학부”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12. “예체능학부” 및 “영상예술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예체능영상학부”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13. 야간의 “정보기술컴퓨터공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주간의 “경제정보학부” 또는 주간의 “정보기술공학부” 또는 주간의 “공학부” 또는 야간의 “정보기술공학부” 또는 야간의 “공학부”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14. 야간의 “공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주간의 “정보기술공학부” 또는 주간의 “공학부” 또는 야간의 “정보기술공학부” 또는 야간의 “공학부”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제 1항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본인이 입학당시의 학부(과)로 이수하기를 희망할 경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타 모집단위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0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21조, 제42조는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4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경제정보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경상대학 “경제학과” 또는 “여론조사학과” 또는 “금융보험부동산학부”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2. 야간의 “경제정보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경상대학 “금융보험부동산학부” 또는 야간의 “부동산학과” 또는 야간의 “금융보험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3. 과학기술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의생명환경대학 “환경시스템학과” 또는 “바이오벤처학부” 또는 “대체건강관리학부” 또는 공과대학 “나노신소재공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4. 야간의 정보기술공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공과대학 “정보기술공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5. 야간의 공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과” 또는 “토목환경도시공학과” 또는 “건축학부”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② 제 1항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본인이 입학당시의 학부(과)전공으로 이수하기를 희망할 경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타 모집단위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하되 제52조 제2항은 200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2조는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는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2조는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2조는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42조는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5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경상대학 여론조사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경상대학 “여론정보통계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2. 공과대학 토목환경도시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3. 예체능대학 체육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예체능대학 “체육학부”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4. 예체능대학 조형예술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예체능대학 “미술학과” 또는 “산업디자인학부”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본인이 입학당시의 학부(과)전공으로 이수하기를 희망할 경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타 모집단위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0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42조는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6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공과대학 정보기술공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또는 문화산업대학 “영

상콘텐츠학과” 또는 “미디어정보학부”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2. 공과대학 건축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또는 “건축학과(5년제)”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3. 야간의 “법정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주간의 “법정학부”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4. 야간의 “부동산학과” 또는 “금융보험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주간의 “금융보험부동산학부”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5. 야간의 “경영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주간의 “경영학부”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본인이 입학당시의 학부(과)전공으로 이수하기를 희망할 경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타 모집단위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6. 12. 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조, 제42조는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7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법·경찰행정학부”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2. 대체의학대학 건강자원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대체의학대학 “대체건강관리학부”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3. 문화산업대학 영상콘텐츠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문화산업대학 “게임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4. 문화산업대학 영상예술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문화산업대학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또는 “영상콘텐츠학부”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본인이 입학당시의 학부(과)전공으로 이수하기를 희망할 경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타 모집단위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4조 및 제42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8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인문대학 기독교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인문대학 “경배와찬양학과” 또는 “교회실용교육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2. 인문대학 언어문화학부에 한국어문학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인문대학 언어문화학부 “국어국문학전공”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3. 인문대학 언어문화학부 한국문화콘텐츠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인문대학 언어문화학부 “역사문화콘텐츠전공”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4. 공과대학 소방안전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공과대학 “소방안전공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5. 예체능대학 산업디자인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예체능대학 “디자인학부”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② 제 1항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본인이 입학당시의 학부(과)전공으로 이수하기를 희망할 경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타 모집단위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및 제42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3. 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42조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사단위 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예체능대학 체육학부 레저스포츠전공 재적생은 예체능대학 체육학부 생활체육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2. 예체능대학 도시환경미술학과와 한지문화산업학과를 2010년 3월 1일부터 폐지한다. 다만, 200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도시환경미술학과와 한지문화산업학과의 재적생은 2013년 2월 말까지는 동 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또한 2010학년도부터 도시환경미술학과와 한지문화산업학과로의 전과를, 2011학년도부터 도시환경미술학과와 한지문화산업학과 편입학·복수전공을 불허한다.

다.

3. 문화관광대학 문화관광학부 관광정보전공 재적생은 문화관광대학 문화관광학부 관광경영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② 제 1항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본인이 입학당시의 학부(과) · 전공으로 이수하기를 희망할 경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타 모집단위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9. 10. 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 4조 및 제42조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42조는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사단위 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상담학전공 재적생은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상담심리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2. 경영대학 경영학부 종합파이낸스전공 재적생은 경영대학 경영학부 금융경영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3. 문화산업대학 영상콘텐츠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재적생은 예체능대학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4. 예체능대학 체육학부 태권도전공 재적생은 예체능대학 태권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5. 문화관광대학 문화관광학부 전통음식문화전공 재적생은 문화관광대학 한식조리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제 1항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본인이 입학당시의 학부(과) · 전공으로 이수하기를 희망할 경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타 모집단위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6.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2조는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42조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사단위 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인문대학 교회실용교육학과 재적생은 인문대학 기독교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인문대학 언어문화학부 각 전공 재적생은 인문대학 인문학부 각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3. 대체의학대학 대체건강관리학부 건강관리전공 재적생은 대체의학대학 보건관리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예체능대학 체육학부 생활체육전공 또는 운동처방전공 또는 축구전공 재적생은 이를 각각 예체능대학 생활체육학과 또는 운동처방학과 또는 축구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5. 문화관광대학 문화관광학부 관광경영전공 또는 패션산업전공 또는 호텔경영전공 재적생은 이를 각각 문화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또는 패션산업학과 또는 호텔경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6. 문화산업대학 영상콘텐츠학부 만화애니메이션전공 또는 영화영상전공 재적생은 이를 각각 문화산업대학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또는 영화영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7. 문화산업대학 미디어정보학부 각 전공 재적생은 문화산업대학 스마트미디어학부 각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본인이 입학당시의 학부(과)·전공으로 이수하기를 희망할 경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타 모집단위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과대학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예체능대학 각 학부(과)·전공 재적생은

이를 예술체육대학 각 학부(과) ·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42조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사단위 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인문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재적생은 인문대학 한국어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인문대학 인문학부 역사문화콘텐츠전공 재적생은 인문대학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인문대학 인문학부 영미언어문화전공 또는 일본언어문화전공 또는 중국언어문화전공 재적생은 이를 각각 인문대학 언어문화학부 영미언어문화전공 또는 일본언어문화전공 또는 중국언어문화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4. 사회과학대학 법 · 경찰행정학부 경찰행정학전공 또는 법학전공 재적생은 이를 각각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5.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문헌정보학전공 또는 사회복지학전공 또는 상담심리학전공 또는 행정학전공 재적생은 이를 각각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또는 사회복지학과 또는 상담심리학과 또는 행정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6. 문화산업대학 스마트미디어학부 정보시스템전공 재적생은 문화산업대학 스마트미디어학부 스마트정보시스템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본인이 입학당시의 학부(과) · 전공으로 이수하기를 희망할 경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타 모집단위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학칙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42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칙 제2조제1항제6호를 포함하여 대체의학대학을 의과학대학으로의 명칭 변경은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 개정에 따라 제 규정의 대체의학대학은 의과학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학사단위 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인문대학 언어문화학부 영미언어문화전공 재적생은 인문대학 영미언어문화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인문대학 언어문화학부 일본언어문화전공 재적생은 인문대학 일본언어문화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인문대학 언어문화학부 중국언어문화전공 재적생은 인문대학 중국어중국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경영대학 금융보험부동산학부 금융보험전공 재적생은 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5. 경영대학 금융보험부동산학부 부동산학전공 재적생은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6. 대체의학대학 각 학과 및 대체건강관리학부의 각 전공 재적생은 이를 각각 의과학대학 각 학과 및 대체건강관리학부의 각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대체의학대학 대체건강관리학부 대체요법전공의 재적생은 의과학대학 대체건강관리학부 대체의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7. 공과대학 생산디자인공학과 재적생은 공과대학 기술융합디자인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제 1항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본인이 입학당시의 학부(과) · 전공으로 이수하기를 희망할 경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타 모집단위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 제53조 교육부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및 제42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사단위 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제4조 개정에 따라 예술체육대학교와 문화산업대학을 폐지하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인문대학 경배와찬양학과 및 기독교학과 재적생은 이를 인문대학 신학과경배찬양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관리전공, 광고홍보전공, 금융경영전공 재적생은 이를 모두 경영대학 경영학과 재적생으로, 경영대학 경영학부 물류무역전공 재적생은 이를 경영대학 물류무역학과 재적생으로, 경영대학 경영학부 회계세무전공 재적생은 이를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의과학대학 대체건강관리학부 건강기능식품전공 재적생은 이를 의과학대학 건강기능식품학과 재적생으로, 의과학대학 대체건강관리학부 환경보건전공 재적생은 이를 의과학대학 환경보건학과 재적생으로, 예술체육대학 운동처방학과 재적생은 이를 의과학대학 운동처방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의과학대학 대체건강관리학부 대체의학전공은 2015년 3월 1일부터 폐지한다. 다만, 201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대체의학전공 재적생은 2018년 2월 말까지는 동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또한 2015학년도부터 대체의학전공으로의 전과를, 2016학년도부터 동 전공으로의 편입학 및 복수전공을 불허한다.
5. 공과대학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재적생은 이를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재적생으로, 공과대학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 재적생은 이를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6. 예술체육대학 음악학과 재적생은 이를 문화산업예술체육대학 음악학과 재적생으로, 예술체육대학 생활체육학과 재적생은 문화산업예술체육대학 생활체육학과 재적생으로, 예술체육대학 축구학과, 태권도학과 재적생은 이를 모두 문화산업예술체육대학 경기지도학과 재적생으로, 예술체

육대학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재적생은 이를 문화산업예술체육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예술체육대학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재적생은 이를 문화산업예술체육대학 시각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7. 예술체육대학 디자인학부 리빙디자인전공은 2015년 3월 1일부터 폐지한다. 다만, 201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리빙디자인전공 재적생은 2018년 2월 말까지는 동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또한 2015학년도부터 리빙디자인공으로의 전과를, 2016학년도부터 동 전공으로의 편입학 및 복수전공을 불허한다.

9. 문화산업대학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재적생은 이를 문화산업예술체육대학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재적생으로, 문화산업대학 영화영상학과 재적생은 이를 문화산업예술체육대학 영화방송제작학과 재적생으로, 문화산업대학 스마트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전공, 스마트정보시스템전공 재적생은 이를 모두 문화산업예술체육대학 스마트미디어학과 재적생으로, 문화산업대학 게임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재적생은 이를 모두 문화산업예술체육대학 게임콘텐츠학과 재적생으로, 의과학대학 예술치료학과 재적생은 이를 문화산업예술체육대학 예술심리치료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본인이 입학당시의 학부(과) · 전공으로 이수하기를 희망할 경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타 모집단위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제3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제31조 제3항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이 학칙 제29조 및 제40조 건축학과와 수료학점 및 졸업학점은 2015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④ 이 학칙 제39조 제2항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42조는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사단위 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문화산업예술체육대학 각 학과 재적생은 문화융합대학 각 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의과학대학 건강기능식품학과 재적생은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의과학대학 환경보건학과 재적생은 환경생명과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본인이 입학당시의 학부(과) · 전공으로 이수하기를 희망할 경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모집단위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단과대학 및 학과 명칭은 다른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40조제3항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2조, 제77조의2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사단위 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인문대학 신학과경배찬양학과 재적생은 인문대학 경배와찬양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과 재적생은 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과 또는 기계자동차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공과대학 기술융합디자인공학과 재적생은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공과대학 나노신소재공학과 재적생은 공과대학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학과 명칭은 다른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2조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사단위 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재적생은 경찰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문화융합대학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재적생은 공연방송연기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문화융합대학 영화방송제작학과 재적생은 영화방송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본인이 입학당시의 학과(전공)으로 이수하기를 희망할 경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모집단위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단과대학 및 학과 명칭은 다른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77조의2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공지능학과 및 IT금융학과와 신설에 관한 사항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관련 조항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사단위 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경영대학 경제학과 재적생은 경영대학 경제학과 또는 IT금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재적생은 경영대학 부동산국토정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② 인공지능학과(40명) 및 IT금융학과(35명)의 신설에 따른 향후 입학정원의 감원계획은 아래와 같다.
 1. 2021학년도: 경제학과 -25명
 2. 2022학년도: 관리정원 -5명
 3. 2023학년도: 관리정원 -5명, 스마트미디어학과 -30명
 4. 2024학년도: 관리정원 -10명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학과 명칭은 다른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단위 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인문대학 경배와찬양학과 재적생은 인문대학 신학과경배찬양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미래융합대학 문화융합콘텐츠학과 재적생은 미래융합대학 문화콘텐츠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미래융합대학 미래기술융합공학과 재적생은 미래융합대학 기술경영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학과 명칭은 다른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12. 1.>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0조(수료), 제21조(졸업)은 2014학년도 이전 학번 학생 중 2015학년도 전기부터 2020학년도 후기 졸업까지 건축학과를 졸업한 학생의 수료 및 졸업 기준은 해당 학년도 수강편람과 교육과정편람에 의거하여 인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단위 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인문대학 영미언어문화학과 재적생은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의과학대학 환경생명과학과 재적생은 의과학대학 환경안전생명과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과 재적생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미래융합대학 농생명ICT학과 재적생은 미래융합대학 농식품경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학과 명칭은 다른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 9. 30.>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29.>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25.>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23.>

제1조(시행일) ①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와 제4조 [별표 1]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제45조제2항제1호와 제2호는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인문대학을 인문콘텐츠대학으로의 명칭변경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사단위 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칙을 적용한다.

1. 인문대학 각 학과 재적생은 인문콘텐츠대학 각 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한국어문학과 재적생은 한국어문학창작학부 한국어문학전공 또는 웹문예창작전공 재적생으로,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재적생은 역사콘텐츠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의과학대학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재적생은 식품영양학과 재적생으로, 환경안전생명과학과 재적생은 환경생명과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재적생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재적생으로,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재적생은 신소재화학공학과 재적생으로, 산업공학과 재적생은 해당 학년에 따라 산업공학과 또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데이터공학과 재적생으로, 기계자동차공학과 재적생은 기계자동차융합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전공 또는 미래에너지공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4. 문화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재적생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재적생으로, 스마트미디어학과 재적생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스마트미디어학과 재적생으로, 경기지도학과 재적생은 측구학과 또는 태권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5. 문화관광대학 외식산업학과 재적생은 외식산업조리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6. 미래융합대학 기술경영공학과 재적생은 미네르바학부 기술경영공학전공 재적생으로, 문화콘텐츠학과 재적생은 미네르바학부 문화콘텐츠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본인이 입학당시의 학부(과)·전공으로 이수하기를 희망할 경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기타 모집단위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학과 명칭은 다른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 11. 8.>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입 학 정 원 표

단과대학	계열	2024학년도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학과(부)	정원	학과	정원	학과	정원	학과	정원
인문콘텐츠대학	기독교	신학과경배찬양학과	15	신학과경배찬양학과	20	신학과경배찬양학과	20	경배와찬양학과	30
	글로벌어문	영어영문학과	25	영어영문학과	24	영미언어문화학과	25	영미언어문화학과	30
		일본언어문화학과	35	일본언어문화학과	36	일본언어문화학과	36	일본언어문화학과	40
		중국어중국학과	20	중국어중국학과	25	중국어중국학과	24	중국어중국학과	35
	인문콘텐츠	역사콘텐츠학과	25	역사문화콘텐츠학과	35	역사문화콘텐츠학과	41	역사문화콘텐츠학과	40
		웹툰만화콘텐츠학과	28						
		한국어문학창작학부	40	한국어문학과	28	한국어문학과	30	한국어문학과	35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	경찰학과	65	경찰학과	63	경찰학과	63	경찰학과	60
		문헌정보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2	문헌정보학과	42	문헌정보학과	40
		법학과	45	법학과	45	법학과	45	법학과	45
		사회복지학과	55	사회복지학과	58	사회복지학과	58	사회복지학과	55
		상담심리학과	55	상담심리학과	53	상담심리학과	53	상담심리학과	50
		행정학과	40	행정학과	40	행정학과	42	행정학과	40
경영대학	경영	경영학과	110	경영학과	124	경영학과	124	경영학과	120
		물류무역학과	45	물류무역학과	54	물류무역학과	50	물류무역학과	60
		회계세무학과	50	회계세무학과	50	회계세무학과	50	회계세무학과	50
	IT금융부동산	IT금융학과	30	IT금융학과	35	IT금융학과	35	IT금융학과	35
		금융보험학과	40	금융보험학과	45	금융보험학과	45	금융보험학과	50
		부동산국토정보학과	40	부동산국토정보학과	40	부동산국토정보학과	45	부동산국토정보학과	40
의과학대학	보건의료	간호학과	81	간호학과	71	간호학과	60	간호학과	50
		물리치료학과	40	물리치료학과	40	물리치료학과	40	물리치료학과	40
		방사선학과	40	방사선학과	40	방사선학과	40	방사선학과	40
		보건관리학과	40	보건관리학과	41	보건관리학과	41	보건관리학과	40
		작업치료학과	40	작업치료학과	40	작업치료학과	40	작업치료학과	40
	의과학	식품영양학과	30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30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30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30
		운동처방학과	33	운동처방학과	30	운동처방학과	33	운동처방학과	30
		재활학과	35	재활학과	35	재활학과	37	재활학과	35
		환경생명과학과	25	환경안전생명과학과	32	환경생명과학과	32	환경생명과학과	34
공과대학	공학1	건축공학과	40	건축공학과	40	건축공학과	42	건축공학과	40
		건축학과 (5년제)	40	건축학과 (5년제)	42	건축학과 (5년제)	42	건축학과 (5년제)	40

단과대학	계열	2024학년도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학과(부)	정원	학과	정원	학과	정원	학과	정원
	공학2	토목환경공학과	34	토목환경공학과	40	토목환경공학과	41	토목환경공학과	40
		기계공학과	30	기계공학과	35	기계시스템공학과	39	기계시스템공학과	40
		기계자동차융합공학부	40	기계자동차공학과	36	기계자동차공학과	36	기계자동차공학과	40
	공학3	소방안전공학과	45	소방안전공학과	42	소방안전공학과	42	소방안전공학과	40
		신소재화학공학과	27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39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40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40
	공학4	전기전자공학과	40	전기전자공학과	42	전기전자공학과	42	전기전자공학과	40
		정보통신공학과	30	정보통신공학과	40	정보통신공학과	39	정보통신공학과	40
				산업공학과	29	산업공학과	32	산업공학과	36
				컴퓨터공학과	57	컴퓨터공학과	57	컴퓨터공학과	55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	데이터공학과	25						
		스마트미디어학과	40						
		인공지능학과	40						
		컴퓨터공학과	60						
문화융합대학	디자인	게임콘텐츠학과	58	게임콘텐츠학과	58	게임콘텐츠학과	60	게임콘텐츠학과	58
		산업디자인학과	35	산업디자인학과	37	산업디자인학과	37	산업디자인학과	37
		시각디자인학과	35	시각디자인학과	37	시각디자인학과	38	시각디자인학과	35
	문화예술	공연방송연기학과	25	공연방송연기학과	26	공연방송연기학과	26	공연방송연기학과	27
		영화방송학과	33	영화방송학과	33	영화방송학과	33	영화방송학과	30
		예술심리치료학과	30	예술심리치료학과	30	예술심리치료학과	31	예술심리치료학과	30
		음악학과	25	음악학과	30	음악학과	35	음악학과	35
	체육	생활체육학과	40	생활체육학과	38	생활체육학과	37	생활체육학과	35
		축구학과	35	경기지도학과	60	경기지도학과	56	경기지도학과	45
		태권도학과	40						
				스마트미디어학과	40	스마트미디어학과	60	스마트미디어학과	70
				인공지능학과	40	인공지능학과	40	인공지능학과	40
문화관광대학	문화관광	관광경영학과	38	관광경영학과	38	관광경영학과	35	관광경영학과	50
		외식산업조리학과	50	외식산업학과	52	외식산업학과	52	외식산업학과	50
		패션산업학과	40	패션산업학과	40	패션산업학과	38	패션산업학과	40
		한식조리학과	55	한식조리학과	57	한식조리학과	57	한식조리학과	55
		호텔경영학과	50	호텔경영학과	50	호텔경영학과	51	호텔경영학과	50
사범대학	사범	가정교육과	30	가정교육과	30	가정교육과	30	가정교육과	30
		과학교육과	30	과학교육과	30	과학교육과	30	과학교육과	30

단과대학	계열	2024학년도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학과(부)	정원	학과	정원	학과	정원	학과	정원
		국어교육과	30	국어교육과	30	국어교육과	30	국어교육과	30
		수학교육과	30	수학교육과	30	수학교육과	30	수학교육과	30
		영어교육과	30	영어교육과	30	영어교육과	30	영어교육과	30
		중등특수교육과	30	중등특수교육과	30	중등특수교육과	30	중등특수교육과	30
		한문교육과	30	한문교육과	30	한문교육과	30	한문교육과	30
미래융합 대학	평생 교육	농식품경영학과	9	농식품경영학과	9	농생명ICT학과	9	농생명ICT학과	6
		창업경영금융학과	11	창업경영금융학과	11	창업경영금융학과	11	창업경영금융학과	6
		미네르바학부	15	기술경영공학과	3	기술경영공학과	3	미래기술융합공학과	3
				문화콘텐츠학과	5	문화콘텐츠학과	5	문화융합콘텐츠학과	5
	지역 혁신	반려동물학사학과	10						
		친환경자동차학과	3						
		로컬벤처학부	7						
	총 계	2,512		2,522		2,557		2,562	

[별표 제2호]

학과별 학위명

[2024학년도]

대학	학(부)과	전공	학위명	대학	학(부)과	전공	학위명	
인문 콘텐츠 대학	신학과경배찬양학과		문학사	의과학 대학	작업치료학과		보건학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일본언어문화학과		문학사		운동처방학과		체육학사	
	중국어중국학과		문학사		재활학과		이학사	
	역사콘텐츠학과		문학사		환경생명과학과		이학사	
	웹툰만화콘텐츠학과		예술학사	공과 대학	건축공학과		공학사	
	한국어문학창작학부	한국어문학	문학사		건축학과 (5년제)		건축학사	
웹문예창작		문학사	토목환경공학과			공학사		
사회 과학 대학	경찰학과		경찰학사		기계공학과		공학사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사		기계자동차융합공 학부	기계자동차공학	기계자동차공학	공학사
	법학과		법학사			미래에너지공학	공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소방안전공학과		공학사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사		신소재화학공학과		공학사	
	행정학과		행정학사		전기전자공학과		공학사	
경영 대학	경영학과		경영학사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사		
	물류무역학과		경영학사	소프트 웨어 융합 대학	데이터공학과		공학사	
	회계세무학과		경영학사		스마트미디어학과		스마트미디어 학사	
	IT금융학과		IT금융학사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학사	
	금융보험학과		금융보험학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부동산국토정보학과		부동산국토정 보학사	문화 융합 대학	게임콘텐츠학과		게임콘텐츠학 사	
의과학 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사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물리치료학과		보건학사		시각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방사선학과		보건학사		공연방송연기학과		공연예술학사	
	보건관리학과		보건학사		영화방송학과		영상학사	

대학	학(부)과	전공	학위명	대학	학(부)과	전공	학위명
문화융합대학	예술심리치료학과		예술심리치료학사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문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중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학사
	생활체육학과		체육학사		한문교육과		문학사
	축구학과		체육학사	미래융합대학	농식품경영학과		농식품경영학사
	태권도학과		체육학사		창업경영금융학과		경영학사
문화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관광학사		미네르바학부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학사
	외식산업조리학과		외식경영학사			기술경영공학	공학사
	패션산업학과		이학사		반려동물학과		반려동물학사
	한식조리학과		조리이학사		친환경자동차학과		공학사
	호텔경영학과		호텔경영학사		로컬벤처학부	힐링레저	힐링레저학사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가정학사			로컬비즈니스	로컬비즈니스학사
	과학교육과		이학사				
	국어교육과		문학사				
	수학교육과		이학사				

[별표 제3호] <개정 2016.2.11., 2016.5.24., 2018.10.1., 2022.7.29., 2022.09.30., 2023.4.25., 2023.6.30.>

학교기업 현황

번호	학교기업의 명칭	사업종목	연계학과	비 고
1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72919)	토목환경공학과 환경생명과학과	

[별지 제1호] <신설 2015.2.2.> <개정 2020.9.1.>

졸업증서번호: 학위증 제00000호

학 위 증

성 명: ○ ○ ○

0000년 00월 00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다음과 같은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제1전공: ○○○○학과 (○○○학사)

제2전공: ○○○○학과 (○○○학사)

부전공 : ○○○학과

0000년 00월 00일

전주대학교 총장 ○○○박사 ○○○ (인)

학위번호: 전주대0000-학-0000

[별지 제2호] <신설 2015.2.2.> <개정 2020.9.1.>

졸업증서번호 : 학위증 제 00000호

명 예 졸 업 증 서

성 명 : 000

생년월일 : 0000.00.00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명예졸업에 관한 학칙에 따라 명예 졸업
자로 인정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0000년 00월 00일

전주대학교 총장 00박사 0 0 0

명예졸업 학위번호 : 전주대 0000-학-0000